

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훈미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2월 9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2월 13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13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fair1110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훈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.

발 의 자 : 이훈미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이동한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의회 법률고문의 위촉 조항에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법률고문의 위촉 자격에서 사무실 주소를 ‘경기도 내’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 (안 제2조제2항제2호)

군포시 조례 제 호

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경기도 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”를 “개업 중인 변호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고문의 위촉) ① (생 략)	제2조(고문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입법 및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②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법률고문: <u>경기도 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</u>	2. ----: <u>개업 중인 변호사</u>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